

2. 부류별 수출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

☐ 신선농산물

○ 통관 시 필요서류

해당기관	필요서류
수출입검험검역국 CIQ (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services)	- 수입 선하증권/Bill of Landing(선사 발행) - 상업송장/Commercial Invoice(수출업체) - 포장명세서/Packing List(수출업체) - 무역계약서/Trade Contract(수출, 수입업체) - 원산지증명서/Certificate of Origin(대한상공회의소) - 식물위생증명서/ Phytosanitary Certificate(농림축산검역본부)
해관(中國海關) (CUSTOMS)	- 수입 선하증권/Bill of Landing(선사 발행) - 상업송장/Commercial Invoice(수출업체) - 포장명세서/Packing List(수출업체) - 무역계약서/Trade Contract(수출, 수입업체) - 입경화물통관단(수출입검험검역국)

☐ 가공 농식품

○ 통관 시 필요서류

해당기관	필요서류
수출입검험검역국 (出入境檢驗檢疫局) CIQ (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services)	- 수입 선하증권/Bill of Landing(선사 발행) - 상업송장/Commercial Invoice(수출업체) - 포장명세서/Packing List(수출업체) - 무역계약서/Trade Contract(수출, 수입업체) - 원산지증명서/Certificate of Origin(대한상공회의소) - 위생증명서/ Health Certificate(식약처) - 영양성분 성적서(공인시험소) - 중문라벨(중문 간체)
해관(中國海關) (CUSTOMS)	- 수입 선하증권/Bill of Landing(선사 발행) - 상업송장/Commercial Invoice(수출업체) - 포장명세서/Packing List(수출업체) - 무역계약서/Trade Contract(수출, 수입업체) - 입경화물통관단(수출입검험검역국)

* 포장식품의 경우 통관 전 중문라벨 심의 통과 필요

□ 기타 사항

- 보건식품의 경우 사전 보건식품등록이 필요
 - 각종 한약재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보건식품으로 분류
 - 특정한 보건 기능을 갖추거나 비타민, 광물질 등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보건식품으로 분류
- 육류, 수산물, 유제품의 경우 '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의 등록관리규정'에 따라 생산가공 공장 사전 등록 필요
- 제품에 따라 중국수출금지 품목은 별도 확인 필요
 - 한국산 돈육, 우육, 계육 및 그 상품은 조류독감, 구제역 등으로 수출금지 품목
 - 신선 농산물 중 수입금지품목(www.qia.go.kr/listWebQia3WGJYYQ.do?clear=1)은 사전 확인 후 수출
 - 쿼터제 운영 품목은 수입자가 쿼터를 보유하여야 수입가능
 - 쌀의 경우 '중국질검총국(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)'과의 검역협상을 통해 사전 비준 필요(한국은 미 비준 상태)
 - 홍삼, 백삼(뿌리삼)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약재허가증서 사전 취득 후 수입가능

3. 대형유통매장 입점

- 입점 시 검역증, 위생허가증 등 정식 통관서류 제출
- 유통기한의 요구조건 : 총 유통기한의 1/2 경과 시 납품거절

<대형유통매장 입점관련 요구 주요서류>

요구서류	비 고	
○ 영업집조 (공상국 발급) ○ 세무등기증 (국세국 발급) ○ 식품유통허가증 (공상국 발급) ○ 위생증서 (중국출입경검험검역국 발급) ○ 상표등록증 · 수권대리서(수출업체 발급)	사업자등록증 세무신고증 국내 식품유통관련 허가증 위생허가증	필수요구
* 수입보관단 (해관 발급)	수입신고필증	선택요구
* 관세 납부증명서 (해관 발급)		선택요구